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19
----------	---------

제출년월일	2003. 5.
제출자	거창군수

개정이유

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1972년도에 제정된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문이 있기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분야별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 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초일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거창군정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주요골자

- 기관내부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우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법령의 개정으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생활보호 위원회 항목을 삭제함(안 제3조제8호)
-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 군정자문단 설치근거를 마련함
 - 분과위원회를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개정(안 제7조)
 -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조항 신설(안제7조의1)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자문하기 위하여 위촉된 임시 단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군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4. 군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
5.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기타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자문단별 의견을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둘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④(생략)</p> <p>⑤ <신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④(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제3조(결정사항) ----- -----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p>	<p>제3조(결정사항) ----- ----- <삭제></p>
<p>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1회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p>	<p>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p>
<p>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자문하기 위하여 위촉된 임시 단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p> <p>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u> 2. <u>군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u> 3. <u>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u> 4. <u>군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u> 5. <u>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 요청 사항</u> 6. <u>기타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u> <p>⑤ <u>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u></p> <p>⑥ <u>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7조의1(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u></p> <p>① <u>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자문단별 의견을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u></p> <p>② <u>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